

#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신교선 위원	답 변	평창군수(건설과장)
회 의	재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98.11.30)(화)		
<p>〈 질의요지 〉</p> <p>○ 봉평면 축산농가 폐천부지매각 일건서류</p>			

〈 답 변 〉

○ 별 첨

□ 관련공무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관 련 기 간	비 고
건설과	건설과장	홍기표	'94. 4. 1 - '96. 7. 12	
·	·	홍기표	'96. 10. 21 - 96. 11. 10	
·	·	안원수	'96. 11. 11 - 98. 2. 15	
·	·	박현창	'98. 2. 15 - 현재	
·	지역계획계장	임준환	'93. 7. 3 - '95. 8. 15	
·	건설행정계장	이영범	'95. 8. 16 - '97. 10. 13	
·	하천방재계장	이강균	'96. 1. 18 - '97. 4. 14	
·	·	장근용	'97. 4. 15 - 현재	
·	지방토목8급	임성진	'94. 3. 15 - '95. 3. 29	
·	·	최창경	'95. 3. 30 - '97. 3. 17	
·	·	김근형	'95. 12. 18 - '96. 3. 4	
·	지방행정8급	김종필	'96. 7. 16 - '97. 4. 14	
·	·	김종완	'97. 4. 15 - '98. 9. 24	
·	지방행정7급	김대승	'98. 9. 25 - 현재	

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 가꿀 미래의 땅  
 평창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32-2011~18) / 전송 김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방재계 (본관 4층) 계 장 : 장 근 용 담당 : 김

문서번호 건설 58175 - 1605

시행일자 1998. 6. 27.

( 제 1 안 )

받음 내부 결재

참조

취 급		군 수
보 존	년	
부 군 수	전 결	26222
과 장	김종	
기 안	김 종 (인)	하천방재계장
		합 소

제목 도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결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결정한 도유 폐천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매매계약 체결 결의

(단위 : m<sup>2</sup>, 원)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내 용		계 약	매 수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금 액	보증금	주 소	성명
계	1필지		3,291	3,291	11,847,600	1,184,760		
봉평면 평촌리	903-18	천	3,291	3,291	11,847,600	1,184,760	봉평면 평촌리 643	곽희중

2. 매각대금 납부일 : '98. 8.20.(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붙임 :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1부. 끝.

( 제 2 안 )

받음 봉평면 평촌리 643 곽희중

제목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송부

전설 58175 -

1. 평소 군정발전 및 지역개발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과 계약 체결하신 도유폐천부지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송부하오니 '98. 8.18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시고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1부.  
2. 납입고지서 2부. 끝.

평 창 군 수

# 廢川敷地 實態調査書

## 1. 재산의 표시(필시필 작성)

하천구분	하천명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현이용상태	점·사용자
소분하천	호동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동면 903-18	903-18	하천	327	천	국토부

## 2. 조사확인 결과

(하천구분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농지개발사업  하천공사지구  기타)

조 사 의 항 목		조 사 결 과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법상 하천구역의 여부(위치도상)</li> <li>- 도시계획법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지 편입 및 향후계획 여부</li> <li>- 국(건설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 여부</li> <li>※ 농지개발사업지구 등의 일반지목은 구동기부, 구토지대장, 구지적도의 지목이 "하천"인지 여부</li> <li>-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의 면적, 소유권 등 일치 여부</li> <li>- 지적도상 하천, 계방 등의 공공용지 분할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재 해당.</li> <li>• 해당 무.</li> <li>• 98.1.5 국(건설부)으로부터 강변도로 양여.</li> <li>• 소유권과 일치</li> <li>• 해당 무.</li> </ul>
하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방의 계내지에 위치 여부</li> <li>- 계획홍수위 이상에 위치 여부</li> <li>- 다시 하천에 편입되지 않을 토지 여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내지 위치</li> <li>• 홍수위 밖에 위치.</li> <li>• 해당 무.</li> </ul>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정비기본계획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법시행규칙 제26조의4, 제2호]</li> <li>- 기간내 최대 강우량시 예상홍수위 이상에 위치 여부</li> <li>- 기간내 홍수위 이상의 지형으로 막혀 있는 토지 여부</li> <li>- 다시 하천으로 편입 가능성이 없는 토지 여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무</li> <li>• " "</li> <li>• " "</li> </ul>

3. 처분계획 ⇒ 양여후 매각 (     ), 하천법 제76조의 교환 (     )

## 4. 조사자 의견

• 존재 해당하천 존재하는 것으로 사용  
 98.1.5 국(건설부)으로부터 강변도로 양여.

1998년 4월 일

위 주시지  
 위 확인시

산업개발국장  
 (인)

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 가꿀 미래의 땅  
평창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32-2011~18) / 전승 :32-3001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방재계 (본관 4층) 계장 : 장근용 담당 : 김종완

문서번호 건설 58175 - 1164

시행일자 1998. 5. 29.

발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수
보존	년	
부군수	대인	762220
과장	유현상	1/2P
기안	김종완	하천방재계장
		협조

제목 도유폐천부지 매각 결의

지계 45532 - 2(98. 1. 4)호 및 지계 45532 - 372(98. 3. 4)호로 매각 지시된 강원도 도유폐천부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코자 합니다.

< 다 음 >

가. 위탁매각 재산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 <sup>2</sup> )	매수자		매각금액(원)
주소	지번			주소	성명	
계	10필지		19,991		6명	177,830,400
방림	계촌리 2064-5	천	3,485	방림 계촌리	김수만	21,147,500
	-6	·	3,785			20,817,500
봉평	덕거리 952-22	·	779	봉평 덕거리	주홍식	4,557,150
	-23	·	578			3,092,300
	-24	·	201			1,075,350
	평촌리 903-18	·	3,291	평촌리	곽희중	11,847,600
용평	속사리 691-2	·	260	용평 속사리	최창순	3,640,000
	1052-39	·	2,592		박새	36,288,000
	-40	·	1,630		권오자	22,820,000
진부	간평리 725-55	·	3,390	진부 간평리	권오자	52,545,000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연고권자)

다. 매각금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적용

붙임 : 가격평정조서 1부. 끝.

평창군수

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 가꿀 미래의 땅  
평창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32-2011~18) / 전송 : 32-3001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방재계 (본관 4층) 계장 : 장근용 담당 : 김종완

문서번호 건설 58175 - 1163

시행일자 1998. 5. 29

받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수
보존	년	
부군수	권장	762000
과장	하천방재계	
		김종완
기안	김종완	하천방재계장
		협조

제목 도유폐천부지 수의 매각에 따른 연고권자 확정 결의

1. 강원도 지계 45532 - 0372(98. 3. 4)호와 관련 입니다.

2. 강원도로부터 위탁 매각 지시된 아래 도유폐천부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 및 강원도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연고권자로 확정코자 결의 합니다.

- 아 래 -

재산의 표시	지 번	지 적 (㎡)	하천점사용허가자		연 고 권 자	
			허가자	허가번호	주 소	성 명
계	10필지	19,991				
방림면 계촌리	2064-5	3,485	김수만	97-3-164	방림 계촌리	김수만
	-6	3,785	김수만	97-3-165		김수만
봉평면 덕거리	952-22	779	주홍식	97-5-98	봉평 덕거리	주홍식
	-23	578	주홍식	97-5-99		주홍식
	-24	201	주홍식	97-5-100		주홍식
용평면 평촌리	903-18	3,291	곽희중	96-5-78	용평 평촌리	곽희중
속사리	691-2	260	최창순	97-6-71	속사리	최창순
	1052-39	2,592	박세관	95-6-6		박세관
	-40	1,630	박세관	95-6-8		박세관
진부면 간평리	725-55	3,390	권오자	97-7-205	진부 간평리	권오자

끝.

평창군수

# 강 원 도

우(200-700)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전화(0361)241-4076 FAX(0361)250-2436/담당 박종완


문서번호 지계 45532 - 0312

시행일자 1998. 3. 4. (3)

경 유

수 신 평창군수

참 조 건설과장

전결		지시			
접	일자 시간	1998. 3. 05	결		
수	번호	16P	재·공		
처 리 과			담	지각	주
담 당 자					

계 목 도유 폐천부지 처분위탁

1. 본건관련 : 강원도 지계45532-0002('98. 1. 5)호 입니다.

2.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로 부터 양여받은 도유폐천부지를 처분하여 그 수입금을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환원투자 하고자 귀 시·군에 처분 위탁 하오니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에 의거 처분하고, 처분 완료시에는 강원도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유폐천부지 처분계획 각1부 끝.

강 원 도 지 사





『敷地』處分計劃(筆地別)

(병상근)

일련 번호	재산의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m <sup>2</sup> )	비고
계		10필지		20,351	
1	방림면 계촌1리	2064-5	하천	3,845	
2	방림면 계촌1리	2064-6	하천	3,785	
3	봉평면 덕거리	952-22	하천	779	
4	봉평면 덕거리	952-23	하천	578	
5	봉평면 덕거리	952-24	하천	201	
6	봉평면 덕거리 <small>전지</small>	<del>952-18</del> 952-18	하천	3,291	
7	용평면 속사리	691-2	하천	260	
8	용평면 속사리	1052-39	하천	2,592	
9	용평면 속사리	1052-40	하천	1,630	
10	용평면 속사리	725-55	하천	3,390	

# 강 원 도

우(200-700)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전화(0361)241-4076 / FAX(0361)250-2436 / 담당 이상규




문서번호 지계 45532-188

시행일자 1997. 12. 22. (㉓)

경 유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건설, 건설행정, 지역개발  
공원하천과장

선결	과장		지	
접	일자 시간	'97. 12. 1997. 12. 23	시	
수	번호	11819	결	
처	리	과	제	
담	당	자	공	
			탐	계장 

제 목 폐천부지 추가고시문 송부

1. 관 련 : 지계 45532-1131('97. 8. 8)호 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신청한 폐천부지에 대하여 강원도보 제1997- 호로 추가고시

하였기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는 점용허가목적의사용

하천구역내 편입, 공공용지 편입 등의 사유로 미고시 되었음을 알립니다.

붙임 : 1. 폐천부지 추가고시문 2부

2. 폐천부지 추가고시 현황(필지별)각 2부 -끝-

## 강 원 도 지



받는곳 : 더(1, 2, 7, 8, 9, 11, 14, 18)



하천별	하천명	폐천부지추가고시현황						폐천발생사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사유	년도
준용하천	유동천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1364-1	답	1,146	경지정리	'88
준용하천	유동천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1372-15	답	660	경지정리	'88
준용하천	계천	황성군	청일면	갑천리	1404-7	답	1,067	경지정리	'90
준용하천	계천	황성군	청일면	갑천리	1404-8	답	331	경지정리	'90
준용하천	계천	황성군	청일면	갑천리	1416-5	답	331	경지정리	'90
준용하천	계촌천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064-5	하천	3,845	도로공사	'91
준용하천	계촌천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064-6	하천	3,785	도로공사	'91
준용하천	덕거천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952-22	하천	779	계방공사	'85
준용하천	덕거천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952-23	하천	578	계방공사	'85
준용하천	덕거천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952-24	하천	201	계방공사	'85
준용하천	덕거천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903-18	하천	3,291	계방공사	'85
준용하천	속사천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691-2	하천	260	계방공사	'87
준용하천	속사천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052-39	하천	2,592	계방공사	'87
준용하천	속사천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052-40	하천	1,630	계방공사	'87
준용하천	오대천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25-55	하천	3,390	계방공사	'91

**"전해자원 우리평창 합계가꿈 미래의꿈"**  
**평창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전화(0374)30-20111/(30-2497)전송 32-3001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방재계(본관 4층) 계장 : 장근용 담당: 김종완

문서번호 건설 58170 -

시행일자 1998. 1.

( 제 1 안 )

발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수
보존	년	
부군수	전결	가인호
과장	김종완	
		김종완
기안	김종	하천방재계장
		협조

**제목 도유폐천부지 대부계약 체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강원도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제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유폐천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부기간 : '98. 1. 5. ~ '98. 12. 31.

2. 대부재산 현황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대부자	
				주소	성명
계	1필지		3,291		
봉평면 평촌리	903-18	하천	3,291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박희중

3. 대부료 : 별도고지

붙임 : 도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끝.

( 제 2 안 )

발음 봉평면 평촌리 643 광희중

제목 도유폐천부지 대부계약 체결 통보

1.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도유폐천부지 대부계약신청에 대하여 강원도 도유폐천부지관리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되었기 통보하오니 대부조건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 1 안 이 기 ---

붙임 : 도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끝.

평 창 군 수

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 가꿈 미래의 땅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 / 전화(32-2011~18) / 전송 : 32-3001  
 처리부서 : 건설과 하천방재계 (분관 4층) 계 장 : 장근용 담당 : 김종완

문서번호 건설 58170 -

시행일자 1997. 11. 5.

발음 봉평면 평촌리  
 과 회 중

취 급		군 수
보 존	년	
부 군 수	2078	김종완
과 장	김종완	
기 안	김종완	하천방재계장
		협조

제목 하천부지 무단시설물 설치에 대한 철거기간 연기 조치

1. 건설 58000 - 2057(96.11. 8)호와 관련 봉평면 평촌리 903-18번지(하천)의 무단 축사 신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기간을 '97.10.31까지 연기조치 하였으나,
2. '98폐천부지 고시착료 실태조사결과 상기 부지가 하천법 제26조의4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로 조사되어 강원도에서 재검토후 폐천부지 고시 또는 하천부지로 확정되며,
3. 강원도의 검토결과 하천부지로 판단될경우 시설물 철거는 불가피하나 폐천부지로 고시되어 연고권자에게 메각시 시설물 설치등이 가능하므로,
4. 귀하의 경제사정등을 감안하여 시설물 철거 기간을 강원도의 폐천부지 고시 확정(98. 4.30)시까지 연기 조치하며,
5. 동 부지가 하천부지로 판정될시는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기 바라며 미 이행시 하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의법조치 및 대집행 철거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제 2 안 )

발음 봉 평 면 장

제목 하천부지 무단시설물 설치에 대한 철거기간 연기 조치

건설 58170 -

1. 건설 58000 - 2057(96.11. 8)호와 관련 봉평면 평촌1리 광희중의 동소903-18번지(하천)의 무단 축사 신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기간을 '97.10.31까지 연기조치 하였으나,

2. '98폐천부지 고시자료 실태조사결과 상기 부지가 하천법 제26조의4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로 조사되어 강원도에서 재검토후 폐천부지 고시 또는 하천부지로 확정되며,

3. 강원도의 검토결과 하천부지로 판단될경우 시설물 철거는 불가피하나 폐천부지로 고시되어 연고권자에게 매각시 시설물 설치등이 가능하므로,

4. 행위자의 경제사정등을 감안하여 시설물 철거 기간을 강원도의 폐천부지 고시 확정(98. 4.30)시까지 연기 조치하였으며,

5. 동 부지가 하천부지로 판정될시는 즉시 시설물의 철거 및 미 이행시 하천법 제 81조 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의법조치 및 대집행 철거됨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끝.

평 창 군 수

## 하천부지 무단시설물 설치에 대한 연기요청

만추의 계절을 맞아 군수님 폭주하는 군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해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의 하천부지에 축사시설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대체축사의 신축동의 어려움으로 97. 10. 31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연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체축사를 조기에 완공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하여 왔으나 소값의 폭락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모자라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의 마리수가 증가하여 축사의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축사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축산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하천을 용도폐지하여 제가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하천의 용도폐지 및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기간까지 원상복구기간을 연장하여 주셨으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축산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다른 군정에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의 이같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저의 요청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만약 하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 군정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

여러모로 복잡다난한 군정에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저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건승과 평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7. 10.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 과 회  드림

평 창 군 수 귀하

선 결	과장		경		
접수일시	1997. 10. 21	시	4시		
처리과			계장	김노	



**건 설 과 장**

우 232-800 강릉도청 행정과 하리 210-2/전화 (0374) 90-2011/(30-2497) 담당 김종필

문서번호: 건설 07000-2911

시행일자 1996. 12. 18.

받음 기획감사실장

참조

취급		과 장
보존	년	양승욱
기안	김종필	하천방재계장  협조

제목: 진정민원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전말 보고

1. 내무 07000-150('96. 4. 16)호, 기획 07000-576('96. 8. 22)호, 건설 07000-1542('96. 8. 27)호와 관련임.
2. 위호에 의거 하천점용허가구역내 불법으로 건축한 옥사·원상복구등 사후조치 강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합니다.

- 붙임 : 1. 진정민원처분 결과 처리 전말 1부
2. 하천점용도변경사항 원상복구 기간연장(4차) 사본 1부
  3. 하천점용도변경사항 원상복구 연기신청 사본 1부. 끝.

**건 설 과 장**

# 진정민원 처분결과 처리 전말

지시 번호	조치 구분	지시 요지	조치 사항	완결 여부	처리 계회	
					완결예정일	계회 요지
	원상 복구	하천점용허가 구역내 불법건 축한 축사의 원상복구동시 부조지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5. 31일까지 2차 연 기</li> <li>○ '96. 5. 27일 원상복구 연 기신청(파회중)</li> <li>○ '96. 10. 31일까지 3차 연 기</li> <li>○ '97. 10. 31일까지 4차연기</li> </ul>	추진중	'97. 10. 31.	이축예정지의 농지전용 및 건축물의 해체 및 이 전공사에 상당기간 소요 '97. 10. 31일까지 원상복 구지시 미복구시 고발등 행정조 치 확행

문서번호: 건설 58000  
시행일자: 1996. 11. 28

발음: 봉평면 평촌1리 643  
참조: 복 회 중

위급		군 수
부군수	김중원	김중원
과장	김중원	김중원
기안	김 중	하천방재계장 김중원

제목: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원상회복 기간 연장 (4차)

1. 건설 58000 - 740 ('96.5.31)호, 건설 58000 - 886 ('96.5.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95.2.23 농경지(경작)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된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천)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10.30일까지 철거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3.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자금조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상회복 기간을 '97. 10. 31일까지 연기조치하니 기간내 철거를 완료하기 바라며,
4. 만약 기간내 원상복구 없을시에는 하천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천법 제 81조 제2호)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제 2 안 )

발음: 봉평면장

제목: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원상회복 기간연장 통보

1. 건설 58000 - 740 ('96.5.31)호, 건설 58000 - 886 ('96.5.28)호의 관련임.
2. '95.2.23 농경지(경작)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된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천)에 점용목적에 위배를 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10.30일까지 철거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3.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자금조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상회복 기간을 '97.10.31일까지 연기 조치하니 기간내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리

의서류

96.11.11

### 하천용도변경사항 원상복구 재연기신청

결실의 제철을 맞아 군수님 그간 군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에서 낙농업을 하고 있는 박희중입니다.  
 지난해 평촌리 903번지의 하천부지를 점용 받아 사용하고 있던중 사유지인 623번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를 침범하게 되어 원상복구지시를 받고 다  
 신축을 위해 96. 10. 30일까지 연기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축사를 짓기 위하여 지난 4월 초부터 토지의 분할측량, 농지전용등  
 기처 현재 신축공사중에 있으나 공정상 년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  
 축사는 저의 실수이지만 다시 신축하게 되어 따르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로 예정된 공정대로 공사진행이 어려우며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와  
 벌금이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었으며, 금년 농산물의 시세도 폭락하여 영농비도  
 있는 격자로 재정적인 타격은 물론 생활고까지 허덕이는 이부 말로는 다 표현할  
 어려운 처지임을 해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원상복구기간을 '97. 10. 31일  
 기조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물론 연기하여 주신다고 하더라도  
 조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저의 영농규모를 생각할때 결코 쉽지한  
 것을 감안하여 주신다면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러므로 복잡한 군정에 어려운 부탁을 하는 저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선처를 부려  
 주시기를 군수님의 진솔과 평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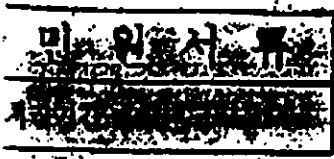
1996. 10. 30.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43 박희중 올림



평창군수 귀하

결	과	장	결	지	(영)	지	(영)
1996. 11. 04	1996. 11. 04	1996. 11. 04	1996. 11. 04	1996. 11. 04	1996. 11. 04	1996. 11. 04	1996. 11. 04



깨끗이 우리정착 함께가꾸 미래의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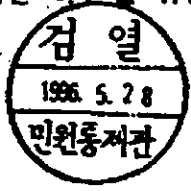
우: 232-80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32-2011~18) / 담당 심재호

문서번호: 건설 58000-806  
시행일자: 1996. 5. 28  
(제 1 안)  
발음: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참조: 각 회 중

위급		군 수
보존	년	
부군수	2리	김영욱 528
과장	김기호	
기안	심재호	지역계획계장 김기호 협조

제목: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원상회복 기간연장(3차)

1. 건설 58000-740('96. 5. 3)호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95. 2.23 농경지<sup>(경작)</sup>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된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 천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 5.31까지 철거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3. 이축예정지의 농지전용절차와 건축물의 해체공사 및 시설공사의 일정을 감안 원상회복기간을 '96.10.30까지 연기조치하니 기간내 철거를 완료하기 바라며,
4. 만약 기간내 원상복구 없을시에는 하천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천법 제 81조 제2호)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 2 안)  
발음: 봉평면장

제목: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원상회복 기간연장 통보

1. 건설 58000-740('96. 5. 3)호의 관련입니다.
2. '95. 2.23 농경지<sup>(경작)</sup> 목적으로 점용허가한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 천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 5.31까지 철거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3. 이축예정지의 농지전용절차와 건축물의 해체공사 및 시설공사의 일정을 감안 원상회복기간을 '96.10.30까지 연기조치하니 기간내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라며,
4. 만약 기간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건설 58000-

(하천법 제81조 제2호) 조치됨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평 창 군 수

이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평창군청 건설과
- 담당자 : 토목 8급 심재호 (지역계획계장 이영범, 건설과장 홍기표)
- 전화번호 : (0374) 30-2491

민원서류  
처리기간: 96. 5. 31

## 하천용도변경사항 원상복구 연기신청

평소 군민들을 위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말 드립니다.  
저는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에 거주하는 박 회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 23일 평촌1리 903번지의 천을 군수님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함에 있어 부지로 인하여 저의 소유인 629번지 전에 측사를 짓는다고 한것이 측  
량결과 하천을 침범하게 되어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피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일로 인하여 관련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게 됨도 모두 저의 잘못이오니 너그려  
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불법으로 지은 측사와 관련하여 96. 3. 30일  
까지 원상회복토록 지시받았으나 해방이 안된 관계로 96. 4. 30일까지 기한  
언장을 받고 농지전용등의 절차를 감안하여 5. 30일로 연장하여 주심에 대하여  
고마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축물을 옮겨갈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농지전용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토지의 분할측량이 필요하게 되어 4원초에 측량신청하여 4. 17일 측량  
하여 4. 25일 측량성과도가 발급되어 현재 농지전용절차중에 있어오미 전용후에  
부지조성공사와 건축물의 해체공사 그리고 시설공사등의 일정이 남아있어 지금처  
럼 원상복구기간을 1개월씩 연기하여 주심은 저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기간은 주  
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시어 96. 10. 30일까지 연기조치하여 주  
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물론 이기간도 장마철과 무더위 기간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기간은 아닐것입니다. 그래도 기간내에 원상회복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  
오니 저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건승과 평창군의 무  
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6. 5. 27.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박 회



평창군수 귀하

선결	과장	65	일자 (공인)		
접수일시	1996. 5. 27	번호 162			
처리과	지서과	3835		마감	이회중



광복 7주년! 이제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읍 하리 210-2/전화(0374) 30-2011 / (30-2491) /담당 심재호

문서번호 건설 58000 ~ 14

시행일자 1996. 5. 3 (년)

경유

(제1안)

발음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참조 과 회 중

취급		군 수
보존	(년)	
부군수	2인	신영수
과 장	김영진	
기안	심재호	지역계획계장 영수 협조

제목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원상회복 촉구

1. 건설 58000-333('96. 3. 2), 건설 58000-532('96. 4. 2)호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95. 2. 23일 농경지 목적으로 <sup>점용</sup>점용허가한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 전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 4.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96. 5. 31까지 원상복구토록 촉구하니 기간내 완료되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2안)

발음 봉평면장

제목 같은건

1. 건설 58000-333('96. 3. 2), 건설 58000-532('96. 4. 2)호의 관련.
2. 위호로 '95. 2. 23일 농경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한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 전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 4. 30일까지 원상회복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96. 5. 31까지 원상복구토록 촉구하였으니 기간내 원상복구 되도록 행정각 관공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



# 평 창 군 수

건축물 철거 이의 신청

주소: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93

상호: 박리풍

상기 보인은 하천부지 정량제 구역에 불법 건축물

축성에 대해 '96. 4. 30까지 철거기간 정량제

구분제 철거의 이의신청을 하여 정량제 상은 가능한 축사

철거는 '96. 5. 31까지 연기하여 정량제

간곡히 요청합니다.

1996. 5. 2

상기 보인 박리풍 

4원 우리평창 합계가골 미리의명

#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봉림읍 하리 210-2/전화 (0374) 30-2011: / (30-2491) / 담당 심재호

문서번호 건설 58000 ~ 618

시행일자 1996. 4. 24 (수)

경유

발음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참조 과 회 중

취급	체 송	군 수
보존	(년)	공기
부군수		
과 장	전 결	지역계획계장
기안	심 재	협조

제목 하전부자의 성토허가시 미 예치한 원상복구비 납부통지

귀하께서 '95. 2. 21일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 토지의 성토허가 신청에 대하여 '95. 2. 27일자로 성토허가 하였으나 허가당시 예치해야할 원상복구비 654천원을 미 예치하였기 불임과 같이 납부통지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부통지서 1부. 끝.



# 평 창 군 수

“전해자원 우리평창 함께가꿀 미래의 땅”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하리 210-2 / 32-2011-18 / 전송33-6356 담당 고용재


문서번호 내무 07000 824

시행일자 1996. 4. 10. (년)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결	과과		지시	
접	일자 사간	1996. 4. 10.	결재	
수	번호	1231		
처리과			공람	
담당자				계장

**제 목 진정민원 조사결과 처분지시**

1. 강원도 감사 07000-150('96. 3. 16)호와 관련임.

2. 봉평면 평촌1리 황보란이 제출한 “연장직사임”과 관련한 진정민원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처리하고 그 결과를 '96. 4. 25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상 ]

- 가. 하전점용허가구역내 불법으로 건축한 축사와 도시계획구역내 불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등 사후조치 강구
- 나. 불법점용한 하전부지 510㎡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조치와 아울러 사후관리 철저
- 다. 하전부지의 성토허가시 미 예치한 원상복구비 654천원은 조속한 시일내 납부조치
- 라. 하전부속물의 관리상황, 하전의 점.사용동에 대하여 정기점검등 하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붙임 : 감사결과 처리전말 1부.

**평 창 군**



수신처 :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봉평면.

"천혜자원 우리평창 합계가꿈 미래의꿈"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32-2011~18) / 담당 (30-2491)

문서번호 건설 58000 - 393

시행일자 1996. 4. 2

(제1안)  
 발음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참조 작·회 중

취급		군수
보존	년	김용우
부군수	2002	
과장	김민	지역계획계장 김민
기안		

제목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원상회복 기간연장 (1차)

1. 건설 58000-393('96. 3. 2)호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95. 2. 23농경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된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 천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 3. 30까지 원상회복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이축예정지에 농지전용절차와 해빙기의 해토문제를 현실적여건을 감안 원상회복 기간을 '96. 4. 30까지 1차연기조치하니 기간내 원상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발음 봉평면장

제목 같은 건

1. 건설 58000 - 333('96. 3. 2)호의 관련입니다.

2. 위호로 95. 2. 23 농경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된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 천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축사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96. 3. 30까지 원상회복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이축예정지의 농지전용절차 및 해빙기의 해토문제를 현실적여건을 감안 원상회복기간을 '96. 4. 30까지 1차연기조치하니 기간내 원상회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평 창 군 수

# 출장복명서


0. 출장일시 : '96. 3. 31

0. 출장지 : 봉평면 평촌리

0. 건명 : 하천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 독려.

1.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복희중이 하천불법용도변경(축사신축)지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기인을 면담하고 하천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을 독려함.
2. 상기인은 해토가 안되어 이축예정지인 본인가옥뒤편 평촌리629번지전7,045㎡에 대하여 조속히 농지전용절차를 마친후 이축하겠다고함으로 1차연기조치가 불가피함.
3. 하천부지내에 갯소등의 방목행위가 없도록 철선과 말죽의 제거를 지시하였으며 본인은 '96. 4. 1까지 철거키로 약속함.

이와 같이 복명합니다.

일시	장소	과장	부군수	군수	인계
	봉평면	김경			/

1996. 4. 1.

지방행정주사

이영범



# 출 장 복 명 서

- 출장일시 : '96. 3. 14
- 출장지 : 봉평면 평촌 1리
- 건 명 : 하천불법 용도변경 원상회복 독려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각 희 중이 하천불법 용도변경(축사신축) 지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기언을 면담하고 원상회복 기한인 '96. 3. 30까지 이촉토록 독려 하였음.

조속한 이촉을 위하여 이촉예정지의 조속한 지정과 농지전용절차를 밟도록 독려함.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젓소 방목행위가 없도록 주지 시켰음.

1996. 3. 15

일련번호	일	장소	부록	군수	결재
	1996. 3. 14	봉평면 평촌리		[인]	[인]

지 방 행 정 주 사 이 영 범



귀하

"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가꾸 미래의꿈"

평 장 군

우 232 -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32 ~ 2011 - 18 / 담당 이종욱 (30-2491)

문서번호 건설 58000 ~ 399

시행일자 1996. 3. 12.

발문 기획실장

참조 기획계장

취급	직접	과장
보존	1년	신 이종욱
계장	대결	
기안	이종욱	협조

제목 제출서류 작성 통보

1. 기획 13600 - 164('96. 3. 12)호의 관련임.
2. 관련호에 의거 제3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불법 건축물 처리상황을 불임과 같이 작성 통보 합니다.

붙임 : 서류제출 목록 17부. 끝.

건 설 과 장

" 계획으로 다진국력 국제화로 경제도약 "



# 제 출 서 류

건 명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조치계획	비 고
<p>2. 하천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설치와 관련 사항</p>	<p>4. 하천무단점용경위 및 처리결과</p> <p>가. 하천불법 용도변경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행위자 인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소 : 평창군 봉평면 평촌 1리 629번지</li> <li>- 성 명 : 국 회 중(남 44세)</li> </ul> </li> <li>○ 하천 점용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봉평면 평촌 1리 903번지선(인근지번 629번지⇒전)</li> <li>- 점용허가면적 : 5.863㎡</li> <li>- 점용허가기간 : '95. 2. 27 ~ '99. 12. 31까지</li> </ul> </li> <li>○ 불법행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부지 약 317㎡에 영구건물인 축사신축(사유지 포함)</li> <li>- 축사신축면적 : 449.4㎡</li> </ul> </li> </ul> <p>나. 하천관련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은 국유재산법제3조에 의한 국유재산으로서 같은법 제4조에 의한 공공용 재산임.</li> <li>○ 국유재산법제5조(국유재산의 보존)에 의거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법제24조 제3항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li> </ul> </li> <li>○ 국유재산법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하거나 이에 시설물을</li> </ul>	

신 상	하천불법용도변경사항 조치계획	비 고
	<p>설치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법제58조(벌칙)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li>○ 하천법제81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ul> <p>다. 처리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무단점사용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2. 27(화) ⇒ 지역계획계장(출장복명)</li> </ul> </li> <li>○ 하천범위반자 적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령 58170 - 432('96. 3. 2)</li> </ul> </li> <li>○ 고발 : 하천법 위반혐의 관련자 고발⇒경찰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58000 - 333('96. 3. 4)호</li> </ul> </li> </ul> <p>라. 향후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상회복 의무부여(하천법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96. 3. 1 ~ '96. 3. 30</li> <li>- 2차 : '96. 4. 1 ~ '96. 4. 15</li> </ul> </li> </ul>	

문서번호 기획 13600 - 164

시행일자 1996. 3. 12.

발음 받는 곳 참조

참조

선결	지시	
접	일자	1996. 3. 12
수	번호	114
처리과	공	망재 저장
담당자	람	지역적희제장

제목 서류제출 및 관련부서 출석통보.

제3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96.3.11)에서 의결 구성된 불법건축물 처리등 진상파악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이를 통보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 래

1. 제출부수 : 17부(관련서류 일건)
2. 요 령 : 서류제출요구 목록중 해당되는 실파 및 읍.면에서는 '96.3.12일까지 기일엄수 기획실로 제출(변철하지 말것)
3. 관계인 출석 : 따로붙임

덧붙임 : 서류제출 요구목록1부. 끝.

평 창 군

도시과.사회과.건설과.축산과.내무과.봉평면





“천 사원 우리경찰 함께가꿈 미래의방”  
평 장 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32-2011~18) / 전 송 (30-2491)

문서번호 건설 58000 - 333

시행일지 1996. 3. 2.

(제1안)  
반음 평창경찰서장  
참조 수사과장

취급		군 수
보존	년	김용우 314
부군수	출장	
과장	출장	지역계획계장 영남주 협조
기안		

제목 하천법 위반혐의 관련자 고발

1. 도시 58554-336('96. 2. 29)호 관련입니다.
2.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인가를 받은자가 별도의 허가물 받지 아니하고 인가조건을 위반하여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자		주민등록번호	하천위치	점용인가 면적	위반사항
주소	성명				
봉평면 참동리 643	곽희중	-----	봉평면 병촌리 903번지(천)	5.863㎡	점용목적 농경지 (전) 317㎡을 대 지로 하여 영구시 설물인 축사신축

- 위반법규 - 국유재산법 제24조3항  
하천법 제25조제1항4호
- 적용법규(법칙) - 국유재산법 제58조  
하천법 제81조



- 붙임 : 1. 고발서 1부  
2. 임의 진술서 1부  
3. 시인서 1부 끝.

(계2안)

발음 봉평면 평촌1리 643 과 회 중

제목 하천불법 용도변경 사항 원상회복 지시

1. 귀하께서 '95. 2. 27 농경지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된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 천에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영구건축물인 축사를 신축한바 이는 국유재산법 제24조3항 및 하천법제25조1항4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관계기관에 의법조치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96. 3. 30이전에 원상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허 가 사 항			위 반 사 항	불법용도 변경면적	비 고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봉평면 평촌1리903	건	5,863㎡	농경지 목적허가 사 항을 대지로 하여 영구시설물인 축사 신축	317㎡	

(계2안)

발음 봉평면장

제목 하천불법 용도변경 사항 원상회복 조치

1. 도시 58554-336('96. 2. 29)호와 관련임
2. 귀면 평촌리 903번지선에 5,863㎡를 농경지 목적으로 점용허가 받은 평촌1리 643번지 과회중이 이중317㎡에 대하여 점용목적에 위배하여 영구시설물인 축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유재산법제24조3항 및 하천법제25조1항4호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기 통보하니 농경지 사용에 적합하도록 원상회복 보복 조치하기 바라며
3. 하천에 오염이 우려되는 발목해위 등 기타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평 창 군 수

# 고 발 서

피 의 자	본 격			
	현 주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643번지		
	성 명	곽 희 중		
	생년월일		직 업	축산업

고 발 사 유	<p>○. 국유제산을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축사를 신축하여 이는 국유제법제24조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으로 국유제산법 제58조 및 하천법 제81조에 의거 고발함.</p> <p>- 점용위치 :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천 903번지선</p> <p>- 불법점용면적 : 317㎡</p>			
기타 참고사항				
적 용 법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제산법 제24조3항</li> <li>· 하천법 제25조1항4호</li> <li>· 하천법 제81조</li> <li>· 국유제산법 제58조</li> </ul>			

위와 같이 곽희중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고발함

1996 년 3 월 2 일

고 발 인 평 창 군 수

평창경찰서장 귀하

# 임 의 진 술 서

## • 진술인

· 소 속 : 평창군청 건설과 지역계획계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이 영 범

주민등록번호

## • 진술내용

- 상기본인은 1985년 8월 16일부터 소속지에서 현재까지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급변 봉평면장과 관련한 감사부서의 위법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고 '96. 2. 27 현지 확인한 결과 봉평면 평촌1리 643 번지에 거주하는 폭희중이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없는 국유재산인 하천을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유재산법제58조 및 하천법 제81조에 따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폭희중은 봉평면 평촌1리 903번지선 전 5,863㎡에 대하여 '95. 2. 27농경지(전) 목격으로 성토인가를 받았으나 건물기타의 어떠한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허가될수 없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 위불법 공작물축조 행위는 95년 11월 말경부터 96년 2월초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위불법 공작물의 부지는 봉평면 평촌리 전(소유자 : 국) 903번지선(인근지번 629번지 소유자 폭경근)이며 약317㎡가 불법 용도변경 되었음을 진술합니다.

1996 년 3 월 2 일

위 진술인 : 지방행정주사 이 영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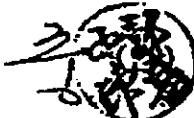


# 시 인 서

- 주 소 : 명장군 봉명면 명촌리 643번지
- 성 명 : 곽 회 중
- 주민등록번호 :
- 위 치 : 명장군 봉명면 명촌1리 903(전)번지 (629번지인근)
- 불법 건축물
  - 용 도 : 축사
  - 건축면적 : 515.28㎡
  - 하천점유면적 : 317㎡
  - 구 조 : 철골조 아연

상기 본인은 상기위치내 축사를 건축함에 있어 하천부지에 저촉되는  
불법사항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1996. 2. .

시 인 자 : 곽 회 중 

봉 명 면

232 - 920 강진 명창 봉명 장등 346 - 1 / 32 - 0103 / 담당 우 경 윤

문서번호 봉명 58170 - 432

시정일자 1996. 3. 2.

(경 유)

발출 명 장 군 수

참조 건 설 과 장

선결	과장	6	지	
점	일자 시간	15:30	시	
수	번호	703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계각

제목 하전법위반자 적발보고

하전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중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자가 있어 적발보고합니다.

위반 행위자		위 지	위 법 사 항	관련법규	비 고
주 소	성명				
명장군 봉명면 명촌리 643	각희중	명장군 봉명면 명촌1리 903 (홍정전)	하전부지내 축사신축 -건축면적 515.28㎡ -점유면적 317㎡	하전법 제25조	※하전점용허가 건설 제5-62호 (’95. 2. 23)

- 붙임 : 1. 사진 1 부  
2. 위치도 1 부  
3. 평면도 1 부 끝.

봉

명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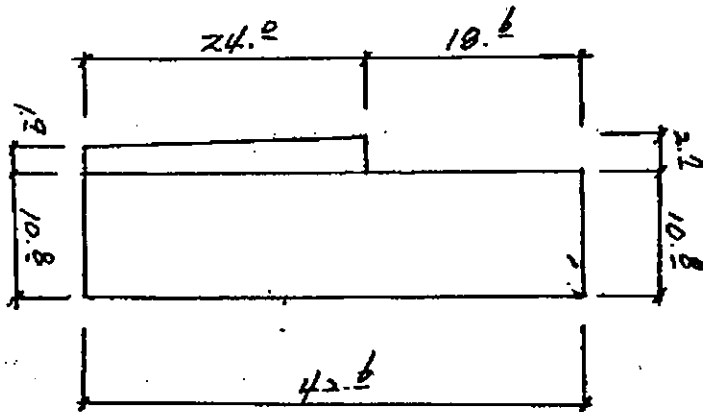


#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1. 건축물 위치 : 경량군 봉평면 경촌1리 629번지
2. 건축주 : 박 회 중
3. 건축규모 :

구 분	기 존 건 축 물	불 법 건 축 물
층 별	1 층	1 층
면 적	축 사 : 192.0 m <sup>2</sup>	축 사 : 515.28 m <sup>2</sup>

## 4. 건축물 실측도



축척 = 1 / 600

## 산출근거

1. 42.6 \* 10.8 = 460.08m<sup>2</sup>
  2. 1.9 \* 24.0 = 45.6 m<sup>2</sup>
  3. 24.0 \* 0.8 \* 0.5 = 9.6 m<sup>2</sup>
- 계 = 515.28m<sup>2</sup>

조사자 : 지방건축서기

박 용 원 (인)

# 출 장 복 명 서

- 일 사 : '96. 2. 27
- 출 장 지 : 봉평면 평촌리
- 건 명 : 하천점용허가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사실확인

## • 허가내용

- 위 치 : 봉평면 평촌 1리 903번지선(인근지번(629번지(전))
- 점용면적 : 5,863㎡(농경지목적 : 전)
- 허가기간 : '95. 2. 27 ~ '99. 12. 31

## • 확인내용

- 건축물 신축(축사) 1동
- 면담확인내용
  - 면 담 자 : 봉평면 평촌리 <sup>643</sup> 689번지 과 회 중
  - 축사 1동(120평)은 '95. 11. 15일착공
  - 축사신축부지는 개인소유(전) 인줄알았으나 95년 12월에 축양결과 하천부지가 권입된 사실을 알았다고함

## • 주지사킨 내용

-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조건에 농경지 목적과 공작물등 타용도전용시는 별도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음을 주지사킴
- 따라서 축사 신축은 불법용도변경 이므로 철거등 원상복구명령이 취따를 것임을 주지사킴

## • 향후처리외견

- 봉평면사무소 지방건축8급 박용원의 현지측량결과에 의하면 축사면적이 515.28㎡로 확인된바 이는 군에서 허가처리되어야 할 불법 건축물로서 앞으로 건축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지시를 할때 하천관련 부분에 대한 허가조건등의 위반사항과 원상복구등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붙임 : 1. 과회중의 축사신축 전경사진 2매.  
 2. 지적도에 의한 하천불법전용 계략도 1부.  
 3. 현지조사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면적 산출 내용 1부. 끝.

위와같이 복명, 합니다.

1996. 2. 28

지방행정주사 이 영 범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일자
	이영범	이영범	이영범	이영범	1996. 2. 28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정군 평정읍 하리 210-2 / (0374)30-2217 / 전송 33-6356


문서번호 내무16800-371

시행일자 '96. 2. 26.

경유

수신 수신처장조

잠조

서 결 번호	과 장		처 리 과		
접 수 번호	일자 시간	1996. 2. 26.	결 재 공 람		
	번호	645			
처 리 과					
담 당 자				계 장	이 영 호

제목 하전 무단 점용 축사 신축에 대한 조치 지시

- '95점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평면 평촌리 629번지 거주 광희중(42세)의 축사 신축 면적 388.8㎡증 약317㎡가 봉평면 평촌리 천903번지선 하전을 무단 점유하여 축사를 신축하고 있는 사실이 민원 발생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었음.
- 본 축사 건립부지는 '95. 2. 23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하전 점용허가를 득한 ('99. 12. 31까지 5,863㎡)하전 부지로서 부관에 구조물 및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4조 행정재산중 「공공재산」으로서 같은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부지임으로
- 관련 실행소장 및 봉평면장은 관련법에 의거 조치계획을 수립 처리토록하고 그 처리결과 또는 중간 조치결과를 '96. 3. 5까지 내무과에 보고하기 바람.

- 첨부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하전 무단 점용 현황도 1부. 끝.

평 창 군



수신처 :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봉평면장

## 畜舎建立 및 放牧場設置에 對한 調查 報告

### □ 畜舎建立敷地現況

- 위 치 : 봉평면 평촌리 하천 903번지선
  - '95. 2.23 : 성토후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5,863㎡  
하천부지 점용허가('99.12.31까지)
  - '95. 1 ~ 4월경 : '95평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서 토사  
운반 성토
- ※ 젓소 43두 사육

### □ 畜舎建立 및 放牧場 設置 推進經緯

- '95 젓소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자중 도암, 황계 이경희 사업  
포기에 따라 봉평면 평촌리 곽희중이 추가 확정('95.10.23)되어
  - 축사시설 100평
  - 착유시설 1조
  - 냉각기 1대를 설치코자 융자 35,991천원, 자부담17,009천원  
등 총53,000천원 투자하여 사업 추진('95.11.10)
- 기존 축사 25평에 착유시설을 설치키 위해 축사 옆에 임시방목  
장을 마련하여 젓소를 사육하고 있던중
- '95.12. 9 축사신축 신고서가 접수되어 선결처리 과정에서 면장  
이 젓소 방목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 여론을 의식 건축담당  
박응원에게 각서 징구토록 지시 하였고,

12.29 면사무소를 방문한 곽희중에게 산업개발계장이 「여론이 있다는」 사유로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각서 제출을 거부하자 축산담당 변훈남에게 각서 징구를 미룬다는 이유로 폭언에 가까운 불평을 토로하자 동인의 입장이 곤란하여 각서 제출

- 변훈남이 각서내용을 면장에게 보고하자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과 동시 재작성 지시
- 방목금지로 기존 축사에 적소를 함께 사육하자 축사 협소로 임신후 8개월된 암소 및 출산한 암소등 2두의 적소가 다쳐 2백만원에 긴급 매각하여 약5백만원 경제적 손실 초래
- '95.11월말경 축산담당 변훈남, 건축담당 박용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평면도 작성을 위한 실측 당시 이미 평기초 및 H빔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지 하였으나, 동건축부지가 하천부지임을 이유로 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등 제반 신고수리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축사신축 융자금은 '95.11.24 공정70%로 융자금 20,000천원 사업확인명세 발급

## □ 畜舍建立 및 放牧場 設置 問題點

### 1. 불필요한 행정지시로 농가불편 초래 및 경제적 손실 초래

- 기존축사 2동중 1동에 착유시설 설치 공사로 신축중인 축사 완공까지 일시 방목이 불가피 하여 축사 옆 부분에 목책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축산분뇨 유출 방지턱 및 간이차집 시설등을 설치하여 방목장을 일시 사용토록 행정지도 하여야 함에도,



- 대안 없이 하천오염 여론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방목금지토록 각서 정구를 면장이 지시 하였고 산업개발계장이 각서 정구시 축산농가에게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 설득하여야 함에도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여 정구

## 2. 관련공무원 행정지도 소홀

- '95점소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로 교체선정 되었을 때에는 군 및 면 관계공무원이 사업조기 완공을 위해 축사신축 대상지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하여 사전 지도 지원 하여야 함에도
  - 봉평면에서는 이에대한 검토 소홀로 축사 기초 및 H빔 기둥이 세워진 이후에 하천부지(사실상 전)약 317㎡가 편입된 사실을 인지 하고 '95. 12.18 불법건축물 공사중지 및 철거 지시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
  - 축산과에서는 점소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농가의 어려운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을 청취 관련부서 및 읍면에 대한 긴밀한 협조로 사전 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

## □ 面長의 指揮能力 및 行態에 對한 問題點

- 방목금지 조치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군수의 전화 질책이 있자, 김춘경등 주민여론이 있어 방목금지 시켰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확인결과(산업개발계장 면담) 봉평거주 김춘경은 이의제기 사실이 없으며, 그밖에 특별히 문제제기 주민은 없는 상태임.

- 축사신축 농가의 애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 면장의 입장에서 향후 하천 오염이 예측된다는 단순한 판단아래, 대안없이 각서를 장구토록 지시한 점은 지역문제 발생시 행정기관 변명용 자료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 축사 하천 점용에 대한 지도감독 면책 목적도 내재함.

- '96. 2. 1(목) 10:00경 총무계 근무 여직원 주경미에게 사직서를 전달 하였고, 계장들을 소집하여 사직서 제출 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계장들의 만류 설득으로 입장 표명없이 불만 토로

※ 사직서 군에 미제출

- 동일 저녁 군의원, 지서장등과 소주를 마시면서 「군수가 축사건립을 지시 하였다는등」 사직서 제출 원인에 대해 불만 토로하여, 면장 사직서 제출 사실과 축사관련 내용이 경찰 첩보로 보고되고 일부 주민도 사직서 제출 사실 인지

- 2. 2(금) 10:00경 총무계장이 면장집을 방문하자 몸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13:00경 면사무소 등청

- 2월 일자 미상일에 신한국당 용평면 협의회장 심재국(44)등 일부 주민에게 평촌리 축사건립으로 팔석정 및 용평상수도 취수원인 흥정천이 오염 된다는 사실을 은밀히 유포하면서 「본인은 축사건립을 반대 하지만 군수가 지시하여 축사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등」 용평면 주민여론 조성을 부추기면서 「직을 걸고 축사신축을 반대」 한다는 내용도 전달

※ 주민여론 조성으로 방목금지조치 근거 마련 목적

- 본 축사건립 부지인 평촌리 하천 903번지선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으로서 토지(전) 경작을 목적으로 같은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 하였으나 부관에 구조물 및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 국유재산법 제4조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으로서 같은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수 없음.**
-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후 미이행시에는 대집행 실시가 불가 피함.**
- 다만, 같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 용도폐지후 매각한 때에는 가능하나 대상여부는 건설과에서 검토**
- ※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신고도 하천법 저촉사항 해결후 가능**

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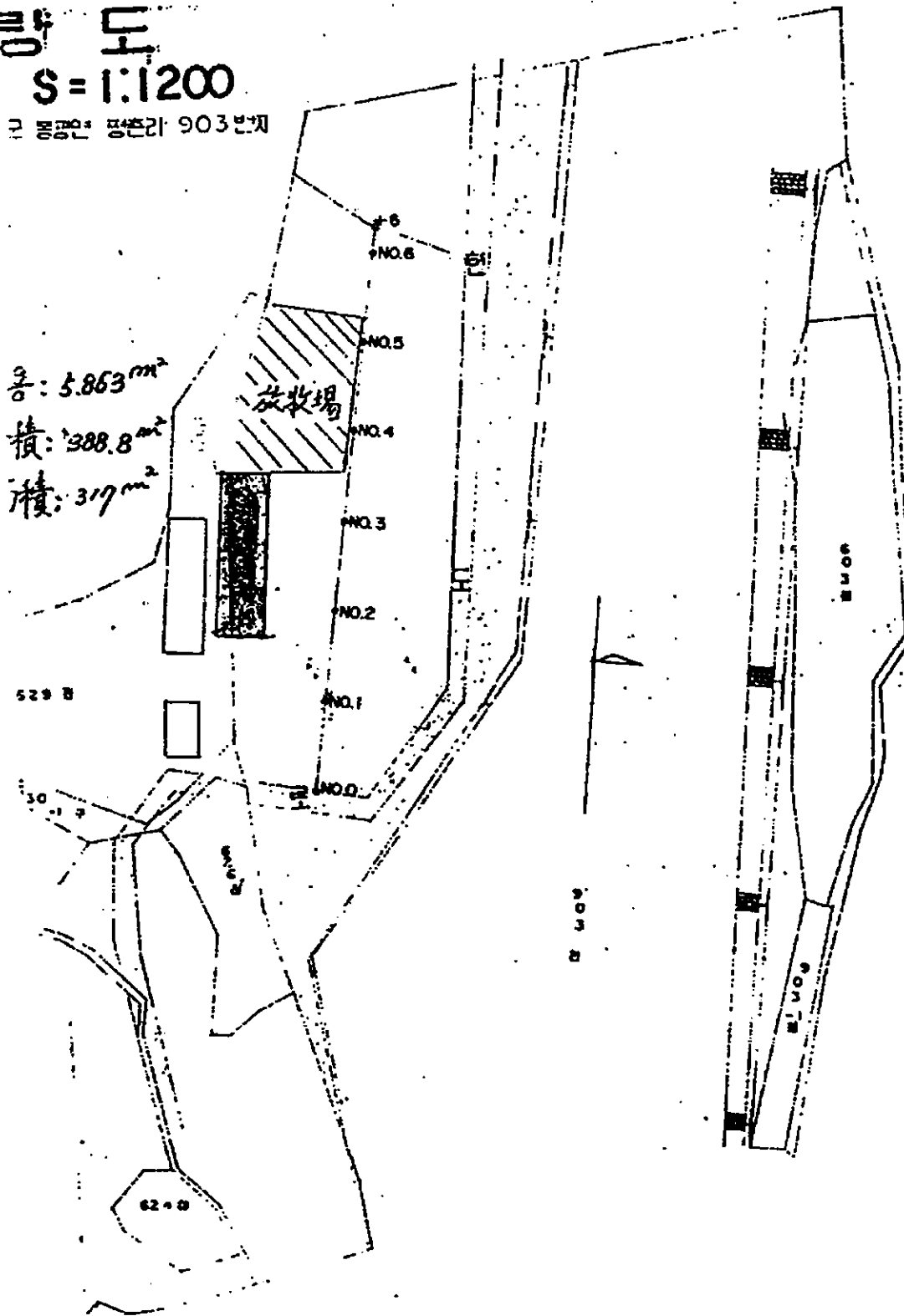
S=1:1200

군 동공안 평촌리 903번지

용: 5.863<sup>m<sup>2</sup></sup>

積: 388.8<sup>m<sup>2</sup></sup>

積: 319<sup>m<sup>2</sup></sup>



시	군
903	
A	

임야도 S=1:6000

**민원서류**  
 접수기간:

50주년! 이제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평 장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읍 하리 210-2/전화 (0374) 30-2011 / (30-2491) /담당 심재호

문서번호 건설 58163 ~ 114  
 시행일자 1996. 5월 (년)  
 경유 (제1안)  
 반응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참조 과 회 증

취급		군 수
보존	(년)	봉평면 평촌리 5/11
부군수	전 결	
과 장	심재호	
기안	심재호	지역계획계장 0346 협조

제목 하천부지 점용허가

1. 귀하께서 신청한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 허가증은 봉평면사무소에 송부하였으니 부당이득금 및 점용료 납부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소재지	지 번	점 용 면 적 (㎡)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피 허가 자	
					주 소	성 명
봉평면 평촌리	903 (하천)	510	농작물 경 작	'96. 5월 ~ '99. 12. 31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박 회 중

(제2안)  
 반응 봉평면장  
 제목 하천부지 점용허가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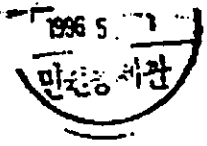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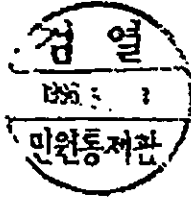


1.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박회중이 신청한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 통보하니 하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 허가증은 부당이득금 및 점용료 징수후 교부하기 바람.

1가사항

제 1 안 이 기

붙임 허가증 1부. 끝.



평 창 군 수

산지 ( 하천부지 ) 의 점용허가증

건설 제 578 호

주 소 : 봉명면 명촌리 643

성 명 : 박 회 중

허 가 내 용

1. 소재지 : 봉명면 명촌리 903 인근유사지번 :
2. 면 적 : 510 m<sup>2</sup>
3. 점용목적 : 경작지
4. 허가기간 : '96. 5. 1 - '99. 12. 31

귀하가 1996년 4월 20일자 출원한 평창군 봉명읍(면) 명촌리 903번지선 하천부지(공유수면) 점용의 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제1항(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함.

1996년 5월 1일

평 창 군



※ 조건사항은 이면 참조

## ( 조      건 )

1. 점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허가에 의한 행위를 실행치 못한다.
3. 점용료를 貸轉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권을 정당한 절차없이 양도양수 또는 상속(승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점용목적 외 사용은 금한다. (목재의 사용시 조종허가 취소)
6. 점용부지내에 정당한 절차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지형 또는 형질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점용 부지내외 다년생 식물을 재식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10. 점용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할 경우에는 늦어도 점용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할수없다.
12. 하천감시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관리청은 피허가자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등을 처분할 수있다.
4. 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피허가자는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없다.



# 발 정 특 명 서

- 일 시 : '96. 4. 12 15:00 ~ 18:00
- 장 소 : 봉명면 명촌리
- 건 명 : 하전 불법행위 원상회복 독려

봉명면 명촌리 643번지 관화의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려하였습.

가. 측사절거

- 조속히 봉명면에서 농지전용(현건물 뒷쪽 본인 소유권) 신고를 받고 측사를 이전토록 독려함.

나. 하전부지 불법전용

- 점용허가 면적 외의 점유사실이 확인된 510㎡에 대하여는 성토 부분의 원상회복이 어려운점을 감안 하전부지 점용허가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함. (성토부분 142㎡, 미성토부분 368㎡)


다. 복구비의 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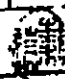
- 복구비 예치누락은 654천원에 대하여는 현금예치 방법과 하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예치로 가능함을 주지시킴

위와 같이 복명합니다.

1996. 4. 13.

복명자      직급   지방행정주사      성명   이 영 범      *이영범*

   직급   지방토목서기      성명   심   지      

과장	<i>65</i>	서기	
<i>김기하</i>		서기	<i>이영범</i>

# 1회 방분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검토 결과

○ 민 원 명 : 하전부지 점용허가 신청

○ 민원인 주소 : 명장군 봉명면 명촌리 643번지

성 명 : 각 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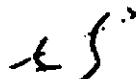
○ 접수 일자 : '96. 4. 20

○ 처리 기 한 :

○ 실무종합심의(검토) 일자 : '96. 4. 25

○ 검토결과 최종의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하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확인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결 지	담당자	계장	과장
			

# 1회 방문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검토 조서

○ 민 원 명 : 하천부지 점유허가 신청

○ 민원인 주소 :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성 명 : 꺾 회 중

○ 접수 일자 : '96. 4. 20

○ 처리 기 한 :

『민원1회방문 처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함.

## 심 의 사 항

관 련 법 규	검 토 부 서	검 토 내 용	결 과		검 토 자	
			가	부	직	성명
국토이용계획법	건 설 과	국토이용계획법상 저촉사항 없음	○		계방 도무서기	심 재 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 경 보 호 과	저촉사항 없음	○		계방 도무서기	심 재 호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	저촉사항 없음	○		계방 도무서기	심 재 호
공유수면관리법 하 천 법	건 설 과	하천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확실히 처리하였음.	○		계방 도무서기	심 재 호
농 지 법	산 업 과	저촉사항 없음	○		계방 도무서기	심 재 호
골 지 채 취 법	건 설 과	저촉사항 없음	○		계방 도무서기	심 재 호


민원서류  
 처리기간: 196.5.6

민원1회발급  
 기념서리

<b>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b>	처리기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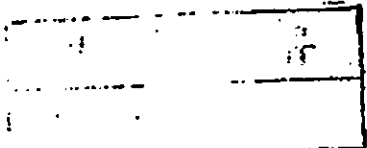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대표자	국 회 중	주민등록번호	
점 용 계 요	주소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번지 (T.E.L : (0374) 32 - 0054)		
	하천명	용 정 천		
	점용위치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903번지 (629번지선)		
	점용면적	510 ㎡		
	점용기간	96년 월 일부터 - 199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경작지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		

하천법 제 25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1996년 4월 일  
 신청인 : 국 회 

평 창 군 수 귀 하

제 1 단계 구비서류 위치도(축척 1/25,000)	제 2 단계 구비서류 평면도 (축척1/3,000 - 1/6,000)	수 수 도 없 음
---------------------------------	--	--------------



명 장 군

우 232-800 강원도 명창군 명장을 하리 210 / 전화 (32-2011~18) / 전 승

문서번호 건설 58172 -가  
시행일자 1995. 2. 가  
(제 1 안)  
받은 봉명면 명촌리 643 번지  
과 회 중

취급		군 수
보존	년	
부군수	전 결	
과장		
기안	최창	지역계획계장
		협조

제목 하전부지 점용허가

1. 귀하께서 신청한 봉명면 명촌리 903 번지선의 하전부지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전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허가조건 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 허가증은 봉명면 사무소에 송부하였으니 5년간 부당이득금, 점용료 및 재수수료 납부후 갖가시기 바랍니다.

○. 하전점용 허가 사항

허가번호	소재지	점용면적 (㎡)	점용목적	허가기간	허가자	
					주소	성명
건설제 호	봉명면 명촌리 903	5863	전	'95. 2. ~ '99. 12. 31	봉명면 명촌리 643 번지	과 회 중

( 제 2 안 )

받은 : 봉 명 면 장

제목 하전부지 점용허가 통보

1. 봉명58171- 347 ('95. 2. 14)호의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전달한 하전부지 점용허가 신청한 봉명면 명촌리 과회중로부터 봉명면

평총리 903 번지의 하전부지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전법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  
하니 하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3. 허가증 교부후 5년간 부당이득금, 점용료 징수 및 제수수료 징수하시 바랍니다.

○ 허가사항 - 제1안 이기

붙임 : 하전점용허가증 1부. 끝.

평 장 군 수

# 토지 ( 하전부지 ) 점 용 허가 증

건설 제 5-12 호

주 소 : 봉평면 명촌리 643 번지

성 명 : 각 회 증

허 가 내 용

1. 소 제 지 : 명장군 봉평면 명촌리 903 번지 인근유사지번:629 (전)
2. 면 적 : 5,863 m<sup>2</sup>
3. 점 용 목 적 : 전
4. 허 가 기 간 : 1995 . 2 . 17 . ~ 1999 . 12 . 31 .

귀 하 가 1995 년 2 월 15 일 자 출 원 한 명 장 군  
봉 평 읍 ( 면 ) 명 촌 리 903 ( 전 ) 번 지 선 하 전 부 지  
점 용 허가 건 에 대 하 여 하 전 법 제 4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허가 조 건 을 부 하 여 허가 함.

1995 년 2 월 17 일





명 장 군 수

\* 조건사항은 이면 참조

조 사 보 고 서

신청 건 명	대전광역시 동구 서천	
적용법규조문	(주거)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제 2 조	
출원자의위치	강 원 도 봉 청 읍 면 봉 초 리 907 번지 ( 전 )	
하 전 의 현 황	상하류연장 및 유역면적	상강 L = 19.11 km, A = 12.16 km <sup>2</sup>
	상하류 및 대안사항	상하류 및 대안사항
	홍수위 및 년수위	연평균 강수량 292.70 mm/day
	홍수량 및 갈수량	Q = 996 m <sup>3</sup> /sec
	유심 안정의 정도	안정함.
	원지반과 저수로지반의 고저의 차	1-1.5 m
	기 타	
부 근 에 미 치 는 영 향	지수 및 이수상의 지장유무	없음.
	도로, 교량, 기타 공작물등의 상황 및 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사유지강락의 상황(준용하전예한함)	/
	법령에 의하여 기허가,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영향	없음.
	동리구역관계인 및 시공부지토지 소유자의 동의여부	취합함.
	계획의 타당성 여부	적합 타당함.
	기타 참고사항 여부	
	중 합 의 견	취합함(2011.12.15)에 대해 취합함

위와 같이 조사보고 합니다.

담당자	직 장	직 위	직 인	직 인
		전 직		

2011년 12월 20일  
 조사자 직급 : 지방토목사  
 성명 : 김강경 (21)

명 장 군 수 귀 하



# 1회 방문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검토 결과

○ 민원명 : 취직부서 정용해부 선정

○ 민원인 주소 : 평창군 평평면 평평리 40번지  
성명 : 박지영




○ 접수일자 : 97. 2. 14

○ 처리기한 : 97. 2. 25

○ 실무종합심의(검토) 일자 : 2. 16

○ 검토결과 최종의견

취직부서 선정에 있어 정용해부 선정이 적당하며  
취직부서 선정이 적당함.

	담당자	계장	과장
결 재			

# 1회방문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검토 조서

○ 민 원 명 : 최천우 정용희 서정

○ 민원인 주소 : 평창군 봉평면 정리 140  
성명 : 최 과 흥

○ 접수일자 : 91. 7. 15

○ 처리기한 : 91. 7. 14

「민원1회방문 처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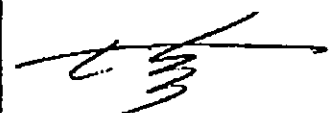

## 심 의 사 항

관 련 법 규	검 토 부 서	검 토 내 용	결 과		검 토 자	
			가	부	직	성 명
국토이용계획법	건설과	적용가능함	○		정용희	최천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 훈과	적용사항없음	○		정용희	최천우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보 훈과	적용가능함	○		정용희	최천우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법						
공유수면관리법 하 전 법	건설과	적용가능함 적용가능함	○		정용희	최천우

관 련 법 규	검 토 부 서	검 토 내 용	결 과		검 토 자	
			가	부	직	성 명
국유재산법 (농림수산부)	건설과					
국유재산법 (건설부)	건설과					
국유재산법 (재무부)	재무과					
광업법	지역 경제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산업과	리정환 등	○		이정환	김영환
내수면 어업기발 촉진 법	축산과					

문서번호 건설 58170 - >75  
 시행일자 1995.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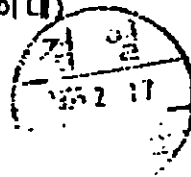
발음 봉명면 명촌2리 643 번지  
 과 회 중

위 급	우 면	군 수
보 존	년	
부 군 수		
과 장	전 결	
기 안	최 장 정	지역계획계장 
		법 조

제목 토지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안내

귀하께서 '95. 2. 15자에 우리군에 접수하신 아래의 민원에 대한 일차 검토결과를 우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 건설과 담당자( 최장정 전화 0374-30-2491)에 문의 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민 원 명 : 토지점용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검토내용
  - 구비서류,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 적합여부
- 검토결과 : 현지확인('95. 2. 18)후 판단할 예정임.
- 민원처리 절차 및 심사기준
  - 현지확인('95. 2. 18)후 종합검토하여 처리예정
  - 심사기준 : 하천법제25조 제1항 규정
- 민원처리완료예정일 : '95. 2. 25(이내)



평 창 군 수

95. 2. 25

가자 미래로 뚫자 세계로

봉 명 면

232 - 920 강원 명장 봉명 장동 346 - 1 / 32 - 0103 / 담당 우 경 은

문서번호 봉명 58171 - 347  
시행일자 1995. 2. 14. ( )

발음 명 장 군 수  
참조 건설 과 장

선결	차장		지	
접	일자	1995. 2. 15	시	
	시간		결	계각
수	번호	103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합	

제목 하전부지 점용허가신청서 송부

봉명면 명촌2리 643 과 회 중 으로부터 하전부지 점용허가 신청건이 접수되었기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하전부지 점용허가신청서 1부 끝.

봉 명 면



# 의 건 서


봉평면 명촌2리 643 번지 광희중 으로부터 동리 903 번지상의 하천부지점용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1. 상기신청안은 1977년부터 명촌리 903 번지내에 농작물재배를 하고 있었으며,
2. 본 신청지는 하천점용 면적이 5,863㎡으로 1가구당 3ha를 초과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경지활용을 할 수 있고,
3. 본 하천부지 신청지는 기존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우수소통은 물론 소하천 정수계획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점용후 농경지로 활용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1995. 2. .

봉 평 면



토지의 점용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8 일	
신청인	① 상호 및 명칭	32-054	
	② 대표 자	곽 회 중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주 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 번지	
점용개요	⑤ 하 천 명	홍 정 천	
	⑥ 점 용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903 번지	
	⑦ 점 용 면 적	5,863 m <sup>2</sup>	
	⑧ 점 용 기 간	1995 년 2 월 부터 ----- 199 년 월 일 까지	
	⑨ 점용목적및사유	전.(농지)으로 이용	
<p>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년 2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곽 회 중 </p> <p style="text-align: center;">평 창 군 수 귀 하</p>			
제 1 단계 구비서류 위치도 (축척 1 / 25,000)		제 2 단계 구비서류, 1. 실측평면도 (축척 1 / 3,000 - 1 / 6,000) * 허가기간 연장시에는 첨부물을 생략한다.	
		수수료 없 음	

##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토지점용허가
- 사 업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 번지
- 사 업 목 적 : 전 (농지) 으로 이용
- 사 업 개 요

#### 부 지 이 용 현 황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잔 여 면 적	비 고
903	전	180,486	5,863	174,623	
합	계	180,486 m <sup>2</sup>	5,863 m <sup>2</sup>	174,623 m <sup>2</sup>	

### 2) 사업자인적사항

성 명	학 회 중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643 번지	전 화 번 호	☎ 32 - 0054

### 3) 사 업 계 획

#### 가. 사 업 목 적(필요성)

- 위 본인은 상 기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기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득한후 전(농지)으로 사용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합니다.